

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안)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(가산금 및 독촉)에 따라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.

2019. 12. 2.

고양시 일산동구청장



1. 제 목 :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: 붙임 참조
4. 공시송달기간 : 2019. 12. 2. - 2019. 12. 17. (15일간)
5.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,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에도 체납 시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(☎ 031-8075-63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